



화성파크드림 **공주월송**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제출

※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1.14)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반드시 '상세'로 발급받으시기 바람.
 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서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반드시 "상세"로 발급받으시기 바람.

| 구분 | 해당서류 | 발급 기준 |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동 서류 | 서약서 | 본인 | • 견본주택 비치 |
| | 자금조달계획서 | 본인 | • 견본주택 비치 ※ 모든 주택형 제출 |
| |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| 본인 | •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, 서명인증서(외국인에 한함)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|
| | 인감도장 | 본인 | 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|
| | 신분증 | 본인 |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(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1부) |
| | 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 | 본인 | •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|
| | 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 | 본인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|
|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본인 | 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|
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본인 | •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 (2022.01.14.)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"Y"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본인 | • 혼인신고일 확인 |
| |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| 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. |
| | 소득증빙서류 | | 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) |
| 해당자 | 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 | 배우자 | •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- 성명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|
| | 출입국사실증명서 |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 | •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• 기록대조일 :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|
| |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| 배우자 | 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|
| |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,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) 제출 •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※ 임신확인서 불가 |
| |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• 입양의 경우 |
| |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| 본인 또는 배우자 | • 임신의 경우 / 견본주택 비치 |
| | 비사업자 확인각서 | 본인 | • 비사업자의 경우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) / 견본주택 비치 |
| | 복무확인서 | 본인 | 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|
| | 부동산 소유현황 | 본인 및 세대원 | •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 가액(3.31억원)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|
| 제3자 대리 계약서 추가서류 | ※ 본인 이외에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, 직계존·비속 포함)로 아래 서류 추가 제출 | | |
| | 위임장 | 본인 | 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/ 견본주택 비치 |
| | 인감증명서 | 본인 | • 본인 발급분에 한함, 대리발급분은 절대불가 (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) |
|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| 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| | |



화성파크드림 공주월송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및 기타사항

■ 소득 증빙서류

| 해당자격 | | 소득 입증 확인 및 제출서류 | 발급처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근로자 | 일반근로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(근로소득자용) ※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▶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("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"으로 발급)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 전이라면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| 해당직장 세무서 |
| |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※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되지 않을 경우 →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 증명서를 제출(개인정보 삭제) | 해당직장 국민연금공단 |
| | 전년도 전직 근로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•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해당직장 |
| |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학원강사, 보육교사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 지급조서) ※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| 해당직장 |
| 자영업자 | 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| 세무서 |
| |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(부분) | 세무서, 국민연금 관리공단 |
| | 신규사업자 등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사업자등록증 사본 |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|
| | 법인사업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본(신고자용) 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법인회계결산서 | 세무서 등기소 |
| 보험모집인, 방문판매원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서 위촉증명서(직인날인)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| 세무서 해당직장 |
|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택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) | 주민센터 |
| 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근로소득지급조서) ※ 상기 서류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| 해당직장 국민연금 관리공단 |
| 무직자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사업자 확인 각서(견본주택에 비치)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| 견본주택 |

- ※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.
- ※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"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"에 따름.
- ※ 모든 제출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,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음(예외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
- ※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·변조 검증을 실시하며, 제출서류의 위·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음.
- ※ 당사업지는 22년 모집공고로 소득기준을 산정할 때 전년도인 21년도 소득을 봐야하나 현 연말정산 전으로 전전년도인 20년도 소득산정을 하게된 단, 휴직, 퇴직자인 경우 어느시점에 퇴사 복직했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상기서류 제출시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바랍니다.

■ 자산보유기준

| 구분 | 자산 보유기준 |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-----------|
| 부동산 (건물+토지) | 3억 3,100만원 이하 | 건축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없는 경우 지체체가 결정된 시가표준액 적용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건축물 종류</th> <th>지방세정 시가표준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주택</td> <td>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</td> <td>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</td> </tr> <tr> <td>단독주택</td> <td>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주택 외</td> <td>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건축물 종류 | |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| 주택 |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|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| 단독주택 |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| 주택 외 | |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|
| | | 건축물 종류 | |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| | | | | | | | | | |
| 주택 |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 | 공동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단독주택 | 표준주택가격(국토교통부) 또는 개별주택가격(시·군·구청장)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주택 외 | |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토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(표준지·개별공시지가)에 면적을 곱한 금액. 단, 아래 경우는 제외 - 「농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·군·읍·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- 「초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- 공부상 도로, 구거,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- 중중소유 토지(건축물을 포함)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,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(예정)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-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(개별공시지가 기준) | | | | | | | | | | | | | |